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효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671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5월 26일
발 의 자: 이효진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규남, 김길영,
김원중, 김원태, 김태수,
남창진, 이상욱, 이성배,
이종환, 황유정 의원(11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립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 대상에 임산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임산부의 시설 이용 편의를 보장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확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임산부에 대한 입장료(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 시설 입장료(이용료) 감면 대상에 임산부를 추가하여, 임산부가 해당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다. 기타 : 법제과 의뢰시 일괄개정조례안으로 검토의견 받았으나, 기획경제위원회로부터 각각의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발의하는게 적절하다는 의견 받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 본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입 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요금의 감면) ① ----- -----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7.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u> <u>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u> <u>른 임산부 본인</u>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제20조(요금의 감면)	△	[기술적 추계 곤란] 임신부 입장료 면제에 따른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관련 통계 부재와 구체적인 이용 수요 예측 불가로 객관적인 비용추계가 곤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신부 본인의 입장료를 면제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 조례 개정에 따라 도시공원 입장료 면제 혜택 적용에 따른 세입 감소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소관 부서(정원도시국 공원여가사업과) 문의 결과 기존 시설 이용 현황 중 임신부를 별도로 분류한 기초 통계가 부재하고, 정책 시행 이후 임신부 입장객 유입 규모와 이용 빈도 등 구체적인 수요 변화를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려워 객관적 추계가 곤란함

[참고] 입장료 등 감면 대상 임신부는 2026년 약 51,000명¹⁾으로 추산됨

임산부 예측치 = '26년 예상 출생아수*(38,000명) × 보정률(134%)*

*국가데이터처(통계청), 장래인구추계(시도별), 서울시

**장래인구추계 기준 '24년 예상 출생아수(35,000명) 대비 실제 임신부 교통비 지원 인원(46,820명)

1) 2026년 서울시 임신부 교통비 지원 개선계획(저출생담당관-12406, '25.10.28.)

4. 작성자

시 의 회 사 무 처 재 정 분 석 과

재 정 분 석 과 장 이 선 희

입법재정지원1팀장 김 선 희

추 계 분 석 관 김 경 명

☎ 02-2180-7955

e-mail : kimkmi0809@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